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구)달성산림조합

2. 제재조치일 : 2024. 1.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조합의 평균 DSR 및 高DSR 관리비율 관리 강화

□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별표14> 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5장 제15조 (DSR의 관리기준) 등에 의하면 조합은 매분기 실행된 대출이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평균 DSR 및 高DSR 관리비율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DSR 활용방안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검사기간 중 분기별 평균 DSR 및 高DSR 관리비율이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DSR 관리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예대율 하락 및 예수금 이자비용 증가 등에 따른 수익성 관리 강화

□ 조합은 2021년 이후 예수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사업자대출을 2021년중 집중적으로 취급함으로써 2022.9월말까지는 예대율이 하락하지 않고 75%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 이후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거의 취급하고 있지 않고 가계대출 취급도 확대하지 못하여 조달자금의 중앙회 예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대출잔액이 2021.1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예대율이 2022.9월말 이후 급감하고 있고,

예수금 이자비용은 2022년중 전반적인 수신금리 인상 및 고금리 특판실시 등의 영향으로 2023.상반기 중 급증한 데 기인하여 예대마진이 2023.상반기 중 급감하는 등 2022년 이후 자금조달 및 자산운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수익구조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예대율 상승을 위해 적정 수신규모를 유지하고 건전여신 확대를 위한 기존 대출 고객 이탈방지 및 신규 고객유치 추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수익성 악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⑶ 자점감사 강화

□ 조합은 내규「회원조합 자점감사 업무 방법」등에 따라 조합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사고요인을 근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위해 일일·수시·특명감사로 구분하여 관련 항목을 점검하고 있으나,

일일·수시·특명감사 시 미흡사항이 확인됨에도 감사결과 이상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자점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점검결과에 감사자의 의견란을 추가하여 최종의견을 기재하는 등 자점검사를 강화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